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』
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
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본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, 서울특별시청, 기초자치단체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,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의 역점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

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직접 주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,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하는 광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
본 조례의 취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교육모델을 마련하는 것에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노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특화된 학습이 장기적으로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본 조례를 바탕으로 각 유관 기관이 협력하게 되면 서울 각 지역에서 전략적이고 특화된 산업이 직업교육과정과 함께 순조롭게 연계되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.

동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서울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, 창업, 선취업후진학, 지역 정주 등을 원활

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이러한 선순환과정이 서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력 양성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3조에서 교육감 등의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업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. 안 제6조에서는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